대한비과학회 연구회 운영세칙

2007. 4. 20. 제정
2014. 3. 9. 개정
2018. 7. 15. 개정
2019. 3. 10. 개정
2020. 8. 23. 개정

제1조(비용지출형식) 연구회에 대한 대한비과학회의 비용지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.

① 현금으로 지출 시는 선 지출을 하고 후에 지급받는 형식으로 한다.

②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는 개인카드로 결재한 다음 결재대금을 지급받도록 한다. 단. 간이영수증은 3만원 한도의 금액을 인정한다.

③ 지급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필히 회의록을 첨부하여 지출을 요구하며, 세부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.

제2조(비용지출범위) ① 연구회에 대한 지출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시행한다.

1. 연구회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사의 강의료 : 강사 1인당 30만원 한도<개정 2018.7.15.>
2. 도시락과 음료, 다과에 대한 경비 : 모임 1인당 2만원 한도
3. 유인물, 기기 대여료, 장소 대여료 : 모임 당 10만원 한도

② 이상의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경비(예: 교통비, 기념품 등)와 통상적인 모임의 범위를 넘어 지출된 경비는 대한비과학회에서 지급하지 않는다.

③ <삭제 2020.8.23.>

※ 연구분과→연구회 <개정 2019.3.10.>